

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수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1. 4.

발 의 자 : 김수민, 김상조, 김영호,
김익수, 김춘남, 박세진,
손홍섭, 윤영철, 이명희,
정하영, 황경환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거 장애인의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,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 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전동기기의 이용촉진을 위해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의 범위에서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-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 기준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
- 수리센터의 불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수리센터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
- 지정 수리센터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3. 참고사항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제32조, 제66조

4. 조례안 : 붙임

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, 생활보장,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지원대상자”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(“전동휠체어”를 포함한다)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
3. “전동기기”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.

제3조(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(이하 “휠체어 등”이라 한다)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(이하 “수리센터”라 한다)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.

- ④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.

제4조(전동기기 충전소)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·운영한다.

- ② 시장은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,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 센터, 교통관련 시설 등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·운영한다.

- ③ 시장은 기타 장애인들의 접근과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·운영을 위해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.

제5조(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)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단,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제6조(수리비용 지원기준)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.

-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

- 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, 장비,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수리비용 지원절차)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, 읍·면·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

1.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
2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,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월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. 단,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후 장애인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③ 읍·면·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,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읍·면·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리센터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한다.

1.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
2.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
3.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					
1. 인적사항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성명		생년월일		성별	남·여
주소	(전화번호 :)				
장애명		장애등급	급		
수급유형	☐ 수급자 ☐ 차상위 ☐ 일반				
2. 수리 신청내용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보장구 유형	☐ 휠체어 ☐ 전동휠체어 ☐ 전동스쿠터				
수리가 필요한 부위		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			
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
구미시장 귀하					
					수수료
					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 m²(재활용품)]

[별지 제2호서식]

연번 :						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						
장 애 인	성 명		생년월일		성별	남 · 여
	주 소			전화번호		
	장애명			장애등급	급	
수급유형		☐ 수급자 ☐ 차상위 ☐ 일반				
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		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				
☐ 휠체어 ☐ 전동휠체어 ☐ 전동스쿠터 ※해당 유형에 체크						
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직인 확인자 : 읍면사무소 · 동 주민센터 담 당 : (서명 또는 인) (○ ○ 지원센터장) 귀하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장래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

업 체 명 :

기간 : . . . ~ . . .

[illegible]

297mm×210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4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									
수리 업체	업체명					대 표 자			
	주 소					전화번호			
수리 기사명			수리기사 자격증 번호						
청 구 내 용									
장애인	성명		생년월일		수급 유형	☐ 수급자 ☐ 차상위 ☐ 일 반			
	주소				장애명 및 등급				
보장구 수리 내역	보장구유형	☐ 휠체어 ☐ 전동휠체어 ☐ 전동스쿠터			비용청구금액		천 원		
	수리 및 교체 부위				소요비용 산출내역				
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									
년 월 일 청구업체 (서명 또는 인)									
구미시장 귀하									
※ 구비서류 : 수리비 확인서 1부								수수료	
								없음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관 련 법 령

[장애인복지법]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제32조(장애인 등록)① 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“등록증”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(査定)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,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

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민연금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,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,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, 장애인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

제66조(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·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,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·대여·수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